제311회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6호(부록)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2년11월15일(목)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제안설명서】

2012년도 국회소관 예비금 지출보고 및 지출동의의 건

국회사무차장 구희권입니다.

먼저 사무총장 대신 사무차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국회소관 예비금 지출보고 및 지출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금 지출보고 및 지출동의 요청은 국회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미 집행한 금액에 대한 지출을 보고하고, 향후 원활한 국회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출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국회소관 예비금은 전년과 같은 13억 원으로서,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2일 현재까지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 액수는 총 9억 59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 등 국회운영을 위한 경비로 6억 3700만 원, 각종 행사지원 등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로 3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금 지출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출동의를 요청하는 예비금은 금년도 예산액 13억 원 중 이미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3억 4100만 원입니다.

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의 의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2억 6400만 원, 각종 행사 지원 등 기관운영비로 7700만 원을 계상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12년도 예비금은 금년도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이한구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방분권의 촉진을 위하여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소속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8대 국회의 지방분권과 관련한 법률안의 대부분은 제대로 심사되지 않고 계류되다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등 현행 일반 상임위원회 소관으로는 지방분권과 관련한 법률안의 충분한 심사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법률안이나 지방자치법 제165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및 연합체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에 관하여는 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회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행정 및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전담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사항 심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및 연합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국회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분권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광주 광산을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에 '헌신'하며, 이를 위해 스스로를 '절제'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일부 권한이 특혜로 남용되어 오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유지하여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회의원 '신분'에 부여된 특혜는 폐지함으로써 '헌신, 봉사, 절제'하는 국회의원상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의 겸직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국회의원의 공직윤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깨끗한 국회를 실현하고자 했으며 다른 직을 겸하는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명예직의 겸직에 대한 절차와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위반에 따른 징계절차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깨끗한 국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본 법안의 법안 취지를 잘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해운대구·기장군갑 서병수 의원입니다.

오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국회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신속처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각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의 2개 이상 법률에 대한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1개의 안건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위원회의 안건이 같이 처리되지 않으면 안건신속처리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시에 현행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간 연석회의(連席會議)제도 또한 소관 위원회가 개회 여부를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과 같이 처리될 필요가 있는 다른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신속처리지정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각 안건의 연계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상 연석회의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며, 아울러 신속처리대상안건과 같이 처리되어야 할 안건이 있는 다른 위원회가 연석회의를 소관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국회법에 규정된 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라북도 정읍 출신 유성엽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상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은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과 함께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 위원,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은 국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당 공직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국회가 심도 있게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확대한 정부위원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국회의 인사검증까지 거치는 3

개 청 기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정부 질문 등에서는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 국무위원의 뒤에 가려져 사실상 심도 있는 정책질의 및 책임 있는 국정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회가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그 대상을 논의할 때, 사실상 독립적인 국가행정을 수행하며 국민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 국무위원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정부위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여 논의·선정하도록 하고, 긴급현안질문의 대상에도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정부위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정부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질의와 국정논의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증대하고 국가행정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법률안의 의미와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이한구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 강동을 출신의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입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의무로, 국회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률안이 의결된 경우 해당 법률이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입법적 불비로 인하여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의 사후조치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의결되어 법률로 확정된 경우,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은 시행령 등의 제·개정 등 해당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그 목적과 취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의결되어 법률로 확정된 경우, 해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행령 등의 제정 및 개정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6개월 이내에 발의 의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98조의2 제1항). 이를 통해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이 법률안의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 발의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법률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원의 의견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98조의2 제3항). 이를 통해 법률안이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여 집행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시 영등포갑 출신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 12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회에서 증인 등을 고발하는 때에는 증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원구성이 변경된 후 새로 구성된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증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후에 증인 등이 위증 등의 죄를 범한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할지라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 등을 고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동 법을 개정하여 국회에서 증인 등이 위증 등의 죄를 범하고 그 사실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밝혀진 경우에는 그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상기 법률개정안을 통해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신중함과 책임감을 더하도록 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152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듯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위하여 요구서를 발부하고 이를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차원에서 증인 등의 주소 등의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고, 행정기관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증인 등의 주소나 출입국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출석요구서 송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증인 등의 주소 등의 정보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또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인사청문을 위한 위원회의 경우에도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할 수 있음을 법률로 명시하고자 합니다(안 제6조제1항).

아무쪼록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시어, 이 개정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서류제출을 한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 자료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방향

'「불출석등의 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에서 현행 선서 부분을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한 자, 선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12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국회에서 보고와 서류제출 요구 등을 한 경우에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보고와 서류제출 등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다른 법률에서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회 자료요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법률안입니다.

국정감·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등이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나, 일부기관에서 국세기본법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하여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정감·조사 등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정책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회가 안건심의 및 국정감·조사를 실효적으로 실시하고 대정부 견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부 보유 정보를 국회가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하나 많은 제약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의 근거로 삼는 개별 법률과 증언감정법이 해석상 충돌할 여지가 있고 행정기관의 부실한 자료 관리 등이 국회 정보요구권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 정부 감독 및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부가 개별법 규정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개정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인천 남동을구 출신 윤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재벌기업인을 비롯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들이 국정감사를 기피하기 위해, 해외출장 등의 일정으로 출국하는 사례가 찾아 입법부의 권위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어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과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인 자가 사유서를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간사위원의 동의를 받거나 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엄히 처벌함으로써 국정감사를 기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려는 것임.

부디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출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152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듯이 현행법상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위하여 요구서를 발부하고 이를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 차원에서 증인 등의 주소 등의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고, 행정기관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증인 등의 주소나 출입국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출석요구서 송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증인 등의 주소 등의 정보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가 요구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해당 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사유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직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자료의 제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거짓 진술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시어, 이 개정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광주 광산을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입니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에 '헌신'하며, 이를 위해 스스로 '절제'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일부 권한이 특혜로 남용되어 오면서 국민의 지탄을 받

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만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인 연로회원에게 매달 연로회의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재직기간 기준이나 의원직 상실 여부, 소득과 재산 등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부터는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으며 기존 연로회원의 경우에도 재직기준, 소득기준, 윤리기준 등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연로회원지원금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재직기준으로는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인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으며, 소득기준으로는 종합소득의 가구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가액 및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10억 원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그 밖에 정관에서 지급제외대상으로 규정한 사람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깨끗한 국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본 법안의 법안 취지를 잘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헌정회에서는 국고보조를 받아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 대하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예우로 국민의 정서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을 현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으로 한정하여 더 이상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며,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와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와 의의를 살피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이한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기 광주시 노철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 경호를 받고 있으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통치권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요인(要人)으로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국가차원에서 보다 안전하게 경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 포함시켜 대통령후보자로 등록한 선거일 24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생가능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통령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김광진 의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12년 9월 3일 김광진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총재 등의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더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국회의 동의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지 아니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노동위원회 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항만위원회위원 등의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구성상의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달리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려는 입법적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장의 경우 2012년 3월 21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개정되었는바, 제5조제6항을 개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타 규정과의 형평성과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더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상 말씀드린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안된 대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국회사무총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행정부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을 국회에도 동일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9급에서 3급까지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현행 22년에서 16년으로 단축하고,

둘째,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기능6급 근속승진 시 적용해 온 승진인원 제한을 폐지하고, 기능8급과 기능9급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각각 1년과 6개월씩 단축하며,

셋째,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